

## 층따기

「건설공사비탈면설계기준(2011, 국토해양부)」

### 4.3 쌓기비탈면 적용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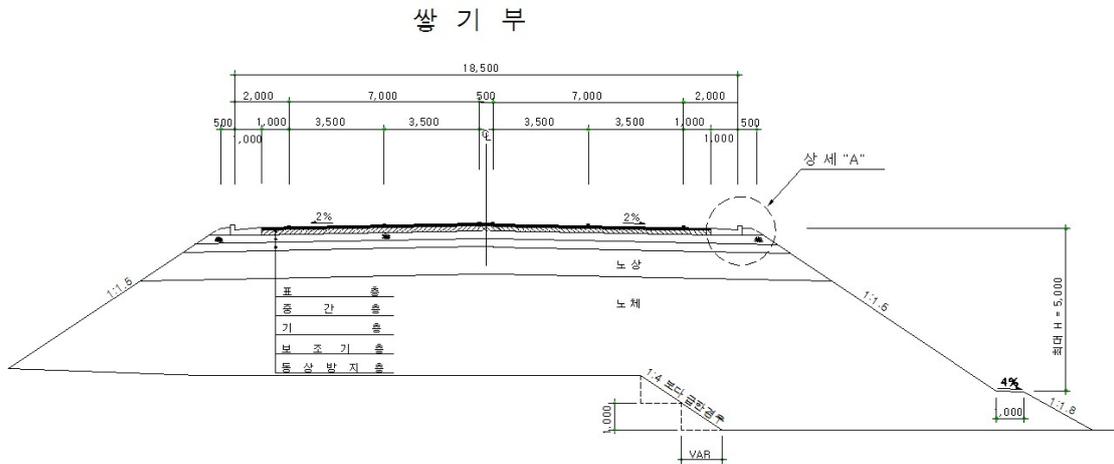
(3) 경사도가 1:4보다 급한 원지반 위에 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원지반과 쌓기 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쌓기토체의 변형 및 활동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「도로공사표준시방서2009」

### 3.2 층 따 기

- 3.2.1 비탈면의 기울기가 1:4 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.
- 3.2.2 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.
- 3.2.3 비탈면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며,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 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 시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3.2.4 층따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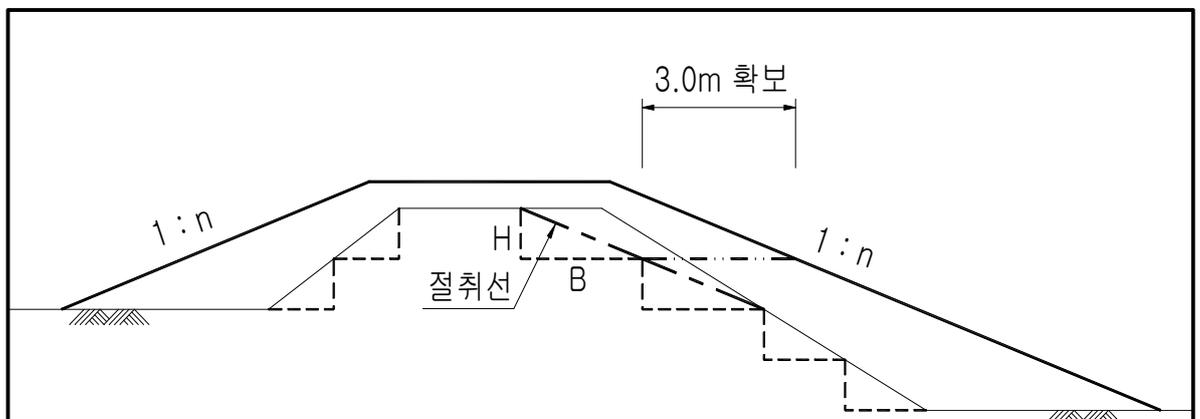
「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中 표준횡단면도」



「하천공사설계실무요령(2009)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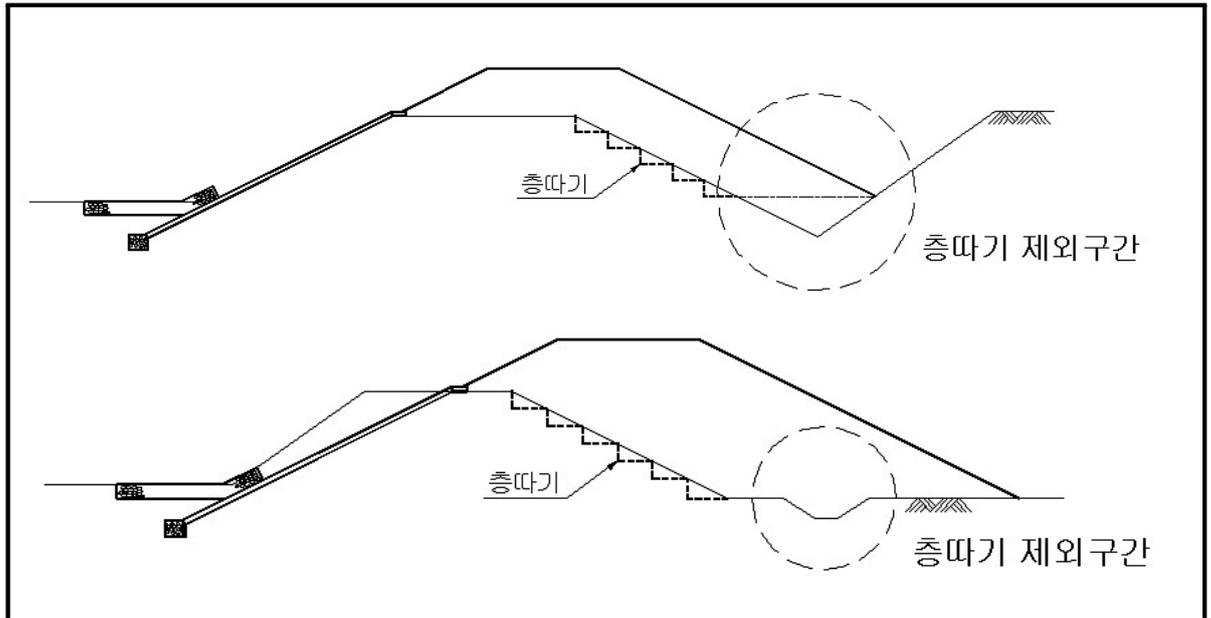
2.2.5 층따기

- 1) 축제지면 중 비탈경사가 1:4 보다 급한 구간을 대상으로 한다.
- 2) 층따기는 빗물이 잘 배수되도록 경사를 둔다.
- 3) 층따기 설계시 효율적인 다짐을 고려하여 성토구간의 다짐폭을 3.0m이상 유지토록 계획하여야 하며, 3.0m이하 구간은 기존체체를 절취하여 성토 다짐폭 3.0m를 확보 후 층따기를 계획하여야 한다.



<그림 2.2-1> 층따기 예

- 4) 수량은 비탈길이로 산출하며 직고높이는 최소 1.0m로 한다.
- 5) 단, 원지반이 1:4보다 급하지만 형상이 “V자형” 으로 성토와 원지반이 밀착되어 활동이 방지되는 곳은 제외 할 수 있다.



<그림 2.2-2> 층따기 제외의 경우

- 6) 층따기 수량은 90%만 유용하고 10%에 대해서는 폐천부지 또는 고수부지에 사토처리(무대)후 성토량을 보정한다.
- 7)  $m^3$ 당 층따기 최소수량은 아래 표를 이용하거나 횡단면도에서 단위면적으로 산출한다.